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5435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401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54354 판결

##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환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최찬실]

변론 종결 2023. 6. 22.

판결 선고 2023. 8. 17.

##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5,107,4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491,2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처이다.

2) C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10억 22,276,175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84호로 기소되어 2019.

11. 22.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노614호로 항소하였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20. 6. 19.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형사판결을 합하여 관련 형사판결, 위 각 형사사건을 합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한다).

#### 1.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C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카사바 재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10월경 원고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카사바를 재배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카사바를 경작해서 얻는 이익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12. 1.부터 2011. 12. 28.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9억 52,276,17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2. 사기

C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포토프린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년 4월경

원고에게 '인도네시아에서 포토프린팅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선거포스터의 수요가 많아 사업전망이 유망하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에 광고를 하여 남은 수익의 50%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09. 6. 9.경부터 2009. 7. 15.까지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8262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C의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8.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C는 원고에게 6억 79,310,6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3. 확정되었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0억 22,276,175원(카사바 관련 사기 9억 52,276,175원 + 포토프린팅 관련 사기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사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C의 변제

C가 원고에게 2019. 6. 13. 50,103,750원, 2019. 7. 2. 2억 513,970원을 각 변제하였다. 관련 형사재판 중 C는 2019. 11. 14. 이 법원 2019년금제28272호로 4억 원을 공탁하고, 2020. 4. 20. 이 법원 2020년금제8892호로 2억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하면, 2020. 6. 24. 현재 원금이 6억 79,310,641원이 남는다.

#### 3. 결론

C는 원고에게 6억 79,310,6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C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5. 29.부터 2020. 5. 28.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4억 15,107,417원을 송금하였다.

5) C는 2016. 5.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 1. 10.경까지 대한민국 내에 아무런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다. 반면 C는 같은 기간 동안 D카드, E은행, F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 을 1,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2008. 12. 1.경부터 2011. 12.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0억 22,276,175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 12. 28.경부터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10억 22,276,17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 반면 C는 위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한편 C가 처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5. 29.부터 2020. 5. 28.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4억 15,107,417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와 C의 관계, C의 무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에게 위 각 송금일자에 위 각 송금한 돈을 증여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

즉,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C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C와 피고 사이에 증여에 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C가 위 각 돈을 송금하는 순간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위 각 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순간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의사실현의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서 부부 또는 친족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이란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생존 수단이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에게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와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방을 지원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무)로 구분되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부양의무가 1차적 부양의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C가 위 각 돈을 송금할 무렵인 2016. 5. 29.부터 2020. 5. 28. 당시 C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1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단기간에 갚을 만한 의사와 능력 및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가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C가 오히려 피고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적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C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돈에 대한 각 일자별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의 일부는 피고 및 다른 가족들의 생활비로서 부부 또는 친족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받은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 또는 다른 가족들이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금 등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만으로 앞서 인정된 추인을 번복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돈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생활비 지급채무의 '변제' 및 대여금 및 기타 다른 채무의 '변제'조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에서 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갑 15의 기재에 의하면, C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20. 5. 11.경 피고가 '오래전부터 C가 원고로부터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오랜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원고의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던 기반을 잡고 성공을 하여 원고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나누곤 하였다. 10년 전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으며 C가 외국에 나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0년경부터 C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과 그 이후 C가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는 C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최고 567만 원에서 최대 1,38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은 셈인데, 이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생활비 및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C와 통모하여 자신의 채무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경제활동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수령한 돈의 재원이 C의 범죄수익 중 일부일 가능성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돈 합계 4억 15,107,4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돈 중 생활비임을 자인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3.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생활비임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억 19,491,29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모두 인용된 이상,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는 C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원고가 C를 사기로 고소한 2019년경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각 돈의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5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미 C가 원고로부터 많은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안성민

판사박진옥

별지